

제400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9월26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3.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9)
1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5)
1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3)
1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1)
1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1)
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
1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2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
2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9)
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
2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
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0)

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3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3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3
3.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3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4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9) 5
1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5) ... 5
1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3) 5
1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1) ... 5
1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1) 5
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
1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 8
1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8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8
2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
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
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8
2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 8
2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9) ... 8
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 8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 8
2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 ... 8
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0) 8
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

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
3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8
3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8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8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
3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

(14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19분)

○위원장 김도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1일간 법무부 등 78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4일에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동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4시20분)

○위원장 김도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해당 감사일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어제까지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하신 2653건의 자료를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님이 요구하는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요구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데 동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시21분)

○위원장 김도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간사님들께서 현재 협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피감기관장과 부서장 등 기관 증인에 대해 출석 요구를 의결하고 일반 증인의 출석요구는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감사 중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피감기관 증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8개 피감기관에서 모두 363명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시 증인으로 채택하되,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감장에 출석하는 증인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관례대로 국회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되, 국회로 출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감사, 민생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수감기관장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김도읍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제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회의록에 신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교육위원회 소

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이 현행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과 의학·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2년제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 관련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부모·자녀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도 휴직사유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동법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국세청장에 급여환수 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반영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제2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용어가 이 조 내에서 장애학생지원부서로 같음할 수 있도록 약칭하고 있는데 다른 조문인 제30조의2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법제적 문제점이 있어 법제 원리에 맞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23조의2를 신설하면서 다른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실시를 의무화하는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약

청하고 있으나 더 이상 본칙에서 이 약칭을 사용한 조문은 없고 또한 이 법에서 '의무교육'이라는 표현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하는 특별한 용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하게 표현하면 이 법의 '의무교육'의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심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운 교육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7항·제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상운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9)

1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5)

1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3)

1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1)

1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1)

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9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6항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접수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이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 대한 피항 명령과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위험물 관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 이미 출항한 어선에 대한 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장이 기상예비특보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상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상예비특보의 정의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당 금지행위의 예외 대상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너지효율 지수와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정의, 계산방법, 제출의무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 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며 전자기록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1조의2제1항에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함을 명시하고, 안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을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서 ‘2022년 11월 1일’로, 안 부칙 제3조 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적용례에서 ‘국제협약 부속서에서 에너지효율검사에 대하여 정한 날’을 ‘2023년 1월 1일’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해기사에 대하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인데, 안 제6조제3호에서의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현행법 제6조제2호에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한 결격사유에 포섭되므로 안 제6조제3호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 1회를 삭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직불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농민이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했는지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자료로서 우리가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 요건을 삭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이 요건을 삭제한 이유가 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기본적으로 1719 조건 외에도 직불금과 관련된 조건은 여러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1719 조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최근까지 농업활동에 종사를 했다는 것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1719 조건 때문에 직불금을 못 받는 농업인들이 꽤 여러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업 농민들의 기본적인 수익 보장 차원인데 제일 중요한, 이분이 전업 농업인으로서 계속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보통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첫해에는 직불금을 못 받고요, 두 번째 해부터 보통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행점검 과정에서 이 농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인지, 그 사람이 정당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새롭게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규정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맞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사실은 그 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저희 농해수위에서, 상임위에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지역에 내려가시면 그것과 관련된 일종의 민원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하고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작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도 그런 이유로 고치게 된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이 제도가 새롭게 진입하는 전업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장애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점이 있고, 그러나 이 제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업 농민으로서 지속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확인 방법이 있으니까 이 제도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농림부에서 기초실장 나오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차관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왜 대리출석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저희가 3시에 상임위가 있어서……

○**정점식 위원** 아, 3시.

○**위원장 김도읍** 3시 전이니까 차관 나와 계십니다.

○**정점식 위원** 소위 1719 기본직불금 요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현장에서 그동안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불편함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많이 호소를 해 왔지요. 그리고 농해수위에서도 계

속 그 문제가 제기되면서 농림부에서는 전국에 걸쳐 가지고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1719 요건을 삭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구나 1719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을 중단했던 분들도 여기에 신청을 못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농업 경영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돼 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1719 요건 삭제 개정안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송상근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정점식 위원** 지금 해수부 쪽에서도 지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나왔는데 여기 대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하나가 경영이양 직접지불 제도, 소위 경영이양 직불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상이 확대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말씀 주신 대로 그 전에 경영이양 직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신청 제한이라든지 수급받을 수 있는 범위의 혜택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에게 경영이양을 좀 더 신속하고 많은 범위 내에서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점식 위원** 그 이전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서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경영이양을 하지 않으면 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적었는데 이양 대상 연령을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많은 경영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이루어지는 경영이양에서는 새로운 청년 어업인들이, 청년 수산인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만들어진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열심히 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님,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안 상정하기 전에, 유인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유인규 예.

○위원장 김도읍 상정 예정으로 되어 있던 3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지금 의견서가 왔습니다. 이게 언제 왔지요?

○전문위원 유인규 제가 받은 것이 오늘 오후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오늘 오후에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유인규 예.

○위원장 김도읍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아마 긴급하게 다 배포해 드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보시고 나중에 대체토론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8)

1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6)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7)

2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0)

2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9)

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0)

2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0)

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0)

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3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2)

3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0)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1)

(14시44분)

○위원장 김도읍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5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소불화탄소를 특정물질에 포함함으로써 허가·승인제를 통해 그 제조·수입·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소불화탄소를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종전 사업자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종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나 승인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와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자가 그 사유 해소 시 바로 계량기제조업 등록 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등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정기관에서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요관리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문 이동에

따른 타법의 인용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사용전기용품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으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안전성검사, 안전성검사표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 작업장 디지털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시제품 개발 지원대상이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는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운영 주체와 그 보조 주체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장으로 동일하여 현재 지자체장이 보조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가 법문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관련 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의 체계·자구상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근로자 지원 대상자의 근속 기간 하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8월 2일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2027년 8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공백이 발생한 2022년 8월 3일 이후 개정법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도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부담금 면제조항은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부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태만 남아 있는 기존 조항은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백기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부칙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 문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조정은 소송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고 개정안에 따를 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위원만으로도 조

정부가 구성될 수 있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조정이 성립될 우려 등이 있는 점 및 기관력 인정시 당사자의 진실된 의사가 아닌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조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구역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에 갈음하여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과오납부된 디자인등록료, 상표등록료, 특허료와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유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인실 특허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 노트북에 게재돼 있는 법안하고 이게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3항부터 35항까지 의사일정,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3개 법안이 전부 다.

그런데 이것하고 과오납한 것 기한 연장해 주는 것하고 지금 서로 안 맞는 얘기라서……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그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그렇게 고친 내용이고요. 저희한테 이

렇게 온 최종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예?

○전문위원 유인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은 당초 안에 있었…… 상임위에서 심사하기 전에 있었고요.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수정 의결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지금 회부한 상태입니다.

○최강욱 위원 본래 이렇게 바뀌서 다른 것들 가지고 한 것은 이렇게 법률안에다 따로 올리지를 않습니까, 주서본이라든가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될 대상으로 심의하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여기 법률안 개정 원안은 경과한 날로부터의 경과규정을 정정한 것인데 지금 검토보고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해 왔었나요?

○전문위원 유인규 예,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는 위원회에서 최종 만든 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고요, 처음 발의된 안에서 수정한 내용은 최종 개정안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게 지금 타당한 건가요? 위원장님께서 좀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 주서본이 올라와 있는 것은, 왜 법사위 의견이나 개정안 의견이 반영되면 거기에다가 주서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의결해야 될 법률안이 된지가 보이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보세요.

최강욱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최강욱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먼저……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법원행정처가 지적한……

전주혜 위원님, 그것 하시려고 그러셨지요? 전 위원님 하실래요?

○전주혜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박범계 위원 의사일정 31항, 제가 소위 사전적 분쟁조정, ADR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원래 많았고 지금 상사중재원도 꽤 중재 판정과 관련

된 활성화가 돼서 관심이 있던 차에 이 사항이 올라왔네요.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박범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분쟁조정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현재도 이미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개정을 하게 되면 현재 10명 정도……

○박범계 위원 아니, 구성 멤버가 어떻게 되느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법률가와 교수 등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법률가라 하면 변호사님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리고 전문가라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관련 업계와 관련된 무슨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건 중재 판정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법률 전문가 혹은 관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종의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 지금 처분 면제라든지 이런 등을 하는 건데 법원 행정처 지적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소위 사법기관의 중재하에 결론을 내면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기·강박, 아까 전문위원 지적한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광범위한 기판력을 인정하는 사례로 자꾸 이게 확대되면 전체적인 사법체계의 어떤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나름 일리가 있는 지적 같거든요. 그래서 전주혜 위원님도 아마, 한번 발언을 들어 보시고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 한번 여쭙볼게요.

이게 지금 산자위에서 법안 심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법원행정처의 의견 받아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전주혜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당시에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없었고요. 저희도 오늘 전문위원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이게 사법 체계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법 체계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랑 관련되는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일단 행정처 의견을 좀 받아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행정처에서 지적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이게 오늘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수정 의결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한번 의견을 여쭙보겠습니다.

행정처에서 한 것 중에 조정 신청으로 가면 시효 중단을 한다,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맞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비슷한 공정거래위원회랄지 아니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런 경우는 당사자들이 신청할 때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법안에서는 그것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 의뢰한 사건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지금 이 규정을 행정처에서는 좀 시효 중단의 의미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신청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중기부장관이 조정에 의뢰하는 경우도 직권이라기보다는 이게 경로상 중기부장관한테 요청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고, 결국 신청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 과정이라는 점은 똑같고, 실제로 사기라든지 강박에 의해서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취지인데 이 조정 제도의 내용 관련 규정을 보시면 어느 일방이 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

하게 되면 이 조정 절차는 그것으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냐면 관련 비슷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소벤처 분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직권으로 요청하고 또 하기 때문에,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위원회랑 다른, 다른 비슷한 분쟁위원회에는 없는 규정이 지금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벌점과 관련해서 행정처 의견은 법 위반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다,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법을 지금 상정을 하는 건지 그리고 법 위반의 어떤 정도나 이런 것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저는 시행령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벌점의 감면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이 가능합니다.

○전주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첫 번째 의견을 준 이것은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바로 읽어서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27조, 28조의2 이 부분은 잘 모를 것 같고.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행정처 의견이 아주 그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계류 정도 해서, 그러니까 계류 정도 해서 이것을 다음 전체 회의까지 몇 개 조문만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소위에 가는 경우는 또 이게 오래 지체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물론 전주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내일 있고 그다음에 10월 말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소위를…… 결국은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10월 말에 해야 되거든요. 10월 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보다는 2소위로 보내서 2소위를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에 국감 끝나고 난 직후에 개최를 해서 법안 정리를 해서 그 자리에 행정처를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서 정리하는데, 2소위를 개최해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시급한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소위, 전체회의 이런 형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 차관님, 제가 좀 여쭙볼게요.

어차피 추가 심의를 할 것 같으니까 기왕 자료 보장을 하시려고 하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형 조정이잖아요. 행정기관이 설치한 조정기관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이런 조정의 경우에 재판상 화해하고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기업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형태의 조정협의회가 하도급법에 있고요. 역시 재판상 화해를 인정하고 있고 대리점 분쟁을 조정하는 것에도 재판상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면 그 행정형 조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우리가 행정형 조정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일반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던데 차이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게 조정기구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절차나 당사자의 신청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셔서 더 강한 효력을 부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조 차관님, 기술보증기금이 중소

기업팩토링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 신설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을 해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사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국가가 채권 인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일종의 상거래행위고 사적 자치를 이렇게 하시면 기준에 따라서 평등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기술보증기금은 일종의 신용보증을 공여하는 기관이 되고요. 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대상은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기술력이 강한 중소기업들이고 기술력에 경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팩토링 제도를 이미 신용보증기금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에도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동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선정 기준은 기술보증기금이 신용평가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대상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아닙니다. 평가모형을 가지고 평가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채권 매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금년에 약 40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범 운용 중에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 평가받는 기업 중에서도 대상 되는 기업이 있고 대상 되지 않는 기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기술보증기금에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평가를 여러 가지로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신용관리가 가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주는 겁니다.

○**유상법 위원**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기업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회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매출채권을 허위로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 매출채권을 근거로 해서 매출채권을 사 줘 가지고 결국 국가가 대금을 줘요. 그러면 사실상 사기잖아요. 그런데도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환청구권이 없으면 결국은 국가가 사기를 조장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로써 잘못되면 악용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물론 그걸 나중에 사법적으로 고발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걸 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보가 이것을 응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기업의 신용을 평가한 다음에 인수할 만하면 인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의 내용은 없습니다.

○**유상법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과정을 겪더라도 결국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최소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본, 그런 제도적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허위 매출채권에 대해서 상환청구권도 없이 매입해 줘 놓고 결국은 사기 범죄가 발생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제도가 그 범죄를 유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라는 최소한의 어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나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제도의 취지는 다 아주 좋고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업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 이런 허위 매출채권이 의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기업의 회계상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채권을 사 주는 경우까지 국가가 면죄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하는 게 어떠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보 같은 경우에 약 열네 가지 정도의 신용평가 모형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리스크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운용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법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 제도는 그냥 가져가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대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이미 다른 신용기관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는 제도라서 말씀하신 만큼 위험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중기부차관님, 이 분쟁조정협의회 때문에, 중기부에 지금 이런 식의 분쟁 조정을 하는 기구가 또 있어요, 다른 분야에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리고 동 법에 있는 것도 이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약 15년간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을……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시효 중단 규정이나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없었습니다.

○**최강욱 위원**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없었습니다.

○**최강욱 위원**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많잖아요, 운영되고 있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최강욱 위원** 여기는 지금 이게 언제 생겼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화해 효력이 있고요. 시효 중단 효력도 있고요.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화해 효력이 생겼습니다.

○**최강욱 위원** 아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언제 생긴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이 제도는 05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05년부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어떤 효력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그동안에는 그야말로 수탁기업하고 위탁기업 간에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그야말로 조정하는 업무만 했습니다. 민간……

○**최강욱 위원** 다른 효력을 부여하는 바가 없이 그냥……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시효 중단 효력이라든지 재판상 화해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쟁조정 업무만 해 왔는데……

○**최강욱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 조정위원회 운영 성과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맞습니다.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성과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조금 조정이 성립하는 비율이라든지 끝까지 조정 과정이 가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정 신청을 해 가지고, 원래 제도가 표방하는 바는 신속하게 또 경제적으로 빨리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없으면 사실은 이 위원회가, 협의회가 제도를 어떻게 만들든 쓸모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 더하기 지금 다른 식의 분쟁조정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점 때문에 여기에 이게 꼭 필요한 건지를 단순히 지금 부처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가지고 다른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살펴서 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위원들께 설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20항부터 27항, 제30항, 제3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법률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7항, 제19항, 제28항, 제29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인실 특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3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9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야만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이 법률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려 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정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5일이 경과한 후에 상정되는 예외로 인정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계기로 저는 저희 법사위에서 고유 법률안과 타 위원회 법률안을 심의하는 순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고유 법률안은 1199건이 지금

아직 상정이 되지 않았고요. 타 위원회 법률안은 47건이 지난 8월 기준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정되지 않은 법안 그리고 가장 오랜 상정을 기다리는 법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제안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려 2020년 9월 24일 날 회부됐습니다. 이렇게 2년이 나 넘게 회부 안 한 법안도 있는 반면에 특정 법안은 5일이라는 아주 작은 숙려기간도 미달해도 상정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특정 법안은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되고 어떤 법안은 이렇게 고속도로를 쉽게 탈 수 있는지, 저는 과연 우리가 형평성 면에서 공정한지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정주 의원의 통과안, 또는 이걸 문체위 전체에 대한 굉장히 면목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들의 협의로 상정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모든 국민과 모든 국회의원, 모든 상임위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선입선출로 가시든지 아니면 정 안 되는 이유를 밝히시든지 그러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요술 상자 같습니다. 세 분이 합의하면 되고 세 분이 합의하지 않으면 2년, 3년 그리고 이제 국회 1년 좀 남았는데 이런 법안들 그냥 사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하반기니까 원칙을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5일이 경과되지 못한…… 그러면 제가 관계자분들께 여쭙봤습니다, ‘정말 숙려기간 하루 더 채워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위원회 설치가 한 달 늦춰진다고 합니다. 한 달 늦춰진다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과연 무력화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말 기다리고 있는 1199건, 47건을 발의한 의원님과 위원회를 위해서도 이번 법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채운 이후에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조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

분 저희 법사위에서 지난 2년 동안 다 많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다 타당하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원칙에 의한 법안의 처리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될 당시 이 법이 실질적 내용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단지 23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만들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신속히 각종 제도적 보완이 돼야 되고 또 행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가 하루라도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당 간사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서,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한 시간적 한계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숙려기간을 남기고 저희가 올린 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가 반복적으로 고민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다음,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법사위를 하면서 느끼는 문제의식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민법 개정안 토론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사위이니 만큼 좀 더 엄격하고 분명하게 법안을 해석하고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일반론에 동의합니다.

원칙이 뭐냐? 형식적인 원칙도 있고 법문에 조문화된 원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편익이 가장 큰 원칙이다,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사위에서 조금만 더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조차 사문화된 아니면 조문화된 원칙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하고 전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견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아까 김진태 지사님 오셨던데 그것과 무관하게 여야 공통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사안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당기게 되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법사위 역시 일도 열심히 하는 법사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최전선이다 보니까 치열하게 쟁론하고 그리고 다투고 또 논쟁하고 이러는 것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아까 조정훈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유법이 많이 쌓여 있어요. 법안소위에서도 아마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11월 예산, 법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는 적어도 11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씩은 잡아서, 고유법인 만큼 시간도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날림으로 처리하지 않고 풍부하게 쟁점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이런 과정들을 동시에 노력하면서, 조정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00개가 넘는 고유법을 그냥 사장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동반한다는 약속들을 서로 드리면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조정훈 위원님의 뼈아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야가 함께 반성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유법이 그렇게 많이 정제되어 있는 것은 지난 21대 국회의 상반기 법사위가 소위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유법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권리·의무에 굉장히 큰, 소위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위법의 경우에는 대체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이런 법률안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위법에 비해서 고유법의 정체가 굉장히 심해졌고 또 그 심해진 원인 중의 하나가 법사위 내에서의 여야 간 극한 대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간사님께서 우리 후반기 법사위에서 일하는 법사위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동민 간사

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고유법 심사에도 속도를 내고,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되었던 타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심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2소위 위원장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그리고 약속을 조정훈 위원님께 드리면서, 이 법안은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은 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예, 잠시만요.

조정훈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저도 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도 강원도 좋아합니다. 이걸 불모로 잡을 생각은 아니었고요.

양당 간사님께서 타위·고유법 신속하게 처리하신다는 약속 믿겠습니다. 다만 속도와 함께 순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99번 중에 내 법안이 언제 논의될까 고민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47개의 타 법률안 중에 뭐가 1번이 되고 뭐가 47번이 될지 이 순서의 결정도 저는 합리적이었다,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당연히 선입선출일 텐데 그것이 아닌 다른 규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게 법사위가 떳떳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역부족이면 할 수 없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원칙들을 세우시고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상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존경하는 기동민 간사님, 유상범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양당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유법은 심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위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선입선출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 유정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애니메이션 진흥법 같은 경우는 그 주요 골자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중첩되는,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도 양당 간사님과 함께 우리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위법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40여 건의 법안들은 상당히 중대한 부처 간의 이견 또는 단체 간의 이견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훈 위원님.

○기동민 위원 잠깐만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기동민 간사님.

○기동민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입선출,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엄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용의 묘라는 것도 있고 또 화급성이라는 것도 있고 각 당의 사정도 있고 국민적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하면 언제 논의, 상정조차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훈 위원이 반대해서 가지고 수포로 돌아갔지만.

저는 적어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뭔가 자율성을 주고, 운영의 원칙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자율성을 주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 나가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율성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정훈 위원님께서 우리 법사위가 내실 있게, 신속하게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충언을 해 주셨습니다. 잘 받아들이겠고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는 상정하는 데 이해를 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

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 조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3년 6월 11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원위원회의 역할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지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한 차관님, 법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통과시킨 강원특별자치도법,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도 굉장히 겸연쩍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다른 2개의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1970년대를 한번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산업이 석탄과 텅스텐 산업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지요? 그 시대에 강원도가 그 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생태계를 유지했고 그 이후, 80년대 석탄 합리화 이후에는 강원도가 어느 순간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차별의 단어도 아닌 사실은 존재 가치조차 없는 그런 지역으로서 인식이 많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삼사십년을 강원도민들은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존재를 갖는지 이런 자괴감도 많이 느꼈었고 그것이 2020년

에 들어와서 비로소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것으로 강원도의 변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지원위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토대를 만들어 내는 곳이 결국 그 지원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실하게 지원위원회 구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전에 준비를 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과는 어떻게 협력할 준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미리 계획 나온 것은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지원위원회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600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는 200만 강원도민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154만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그 넓은 강원도의 땅이 154만이 될 때는 산림·환경·군사·농업, 이와 같은 지속적인 어떤 규제가 강원도를 너무나 많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규제된 지역을 다 합하면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도 넓습니다, 중첩 규제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규제가 되면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기본, 아주 당연한 논리가 강원도에 만연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지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또 청정구역, 대한민국 힐링 구역으로서의 강원도, 이와 같은 강원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남국 위원님, 손 드신 겁니까?

○**김남국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말씀하세요.

○**김남국 위원**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안산 지역에서 강원도민들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강원도민들께서, 이 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

면서 호소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희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방 소멸을 가장 빠르게 지금 겪고 있는 곳이 강원도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사보호구역을 포함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구역 등등 각종 규제에 따라서 강원도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권이 침해되기도 하고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정말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유상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정말 강원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발전,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합니다.

특히나 비교가 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비교가 됩니다. 제주도는 이 법안이,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강원도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기존의 2개의 특별자치도 사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 특례를 인정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6월 달에 최초로 이 법 통과할 때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 강원도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지원위원회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이라도 특례를 인정하는 그런 게 아마 우선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위원**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현재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예타 면제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강원도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그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함께 고려가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타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당 부서인데요.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정말 많은 강원도인뿐만 아니라 지방에 사시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서 정말 강원도의 큰 미래 그림을 좀 그려 갈 수 있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 법안 제안 취지나 이런 것을 보니까 세종하고 제주도에 이 지원위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것도 나중에 추가 입법을 통해서 보완된 거예요, 위원회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니, 처음 법안 만들 때부터 지원회 있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빠져 있었다가 지금 이번에 하게 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난 6월 달 이 법 통과 당시에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시일이 좀 촉박한 면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짧은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는 그런 면에서 일부 특례라든지 위원회 설치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고 나머지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최강욱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도 특별자치도라고는 하지만 강원이나 세종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법안이 지난번에 통과됐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내지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게 쟁점이 될 리도 없고 다른 데가 다 있었으면 그때 다 포함해서 전례와 같이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가 진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러면 또 해 보다가 세종이나 제주에 비해서 강원도 좀 미흡하다 하

는 면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추가 법안으로, 지금 개정안으로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원위원회 설치가 되고 나면 지원위원회에서 그 중요한 특례 인정 부분이 있습니다. 특례 인정은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것 관련해서도 아마 추가 입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추가 입법이 필요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 지원위원회는 여기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왜 그게 그때 납득이 안 됐지요? 왜 받아들이지를 않았지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잘 하시겠지만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례가 없으면 몰라도, 새로운 제정법이라면 몰라도, 다른 전례들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간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굉장한 낭비잖아요? 한 번에 해결할 일을 나눠서 하고 또 검토해 보고 또 하고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뭐가 쟁점이어서 안 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다음에는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쭙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난번에 일단 충분한 시간이 없이 특별자치도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아마 진행된 그런 면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위원** 아니,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뭐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원위원회와 특별, 특례 인정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욱 위원** 지원위원회하고 또 뭐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특례 인정하는 게……

○**최강욱 위원** 특례 인정 부분.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지원위원회에서 그것은 검토하기로 하셨다면서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리고 또 지금 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행정체제의 특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최강욱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걸로 해서 일단……

○최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의 통과를 위해서 일단 뒤로 미룬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원위원회는 그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때도 그게 쟁점이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그것하고 시기는 좀 다르지만 정부에서는 정부 위원회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최강욱 위원 그때는 정부가 반대했던 거예요, 지원위원회 투자하는 걸?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합의가 안 된 그런, 그 당시 논의하다가……

○최강욱 위원 정부 간 합의가 안 됐다고요? 부처 간 합의가 안 됐다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위원회 내에서 위원회를 설치할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 두고 특별법이 통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차관님, 스스로는 지금 그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건데 왜 그때는 이것을 못 하고…… 지금 추가 입법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도 여야 간에 아무런 반대나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최강욱 위원 이게 왜 안 들어가고 이런 입법 소요가 불필요하게 더 낭비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말씀드리지만 조항에 보시면요, 뒤쪽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뭐가 다른 조항이 있어요, 다른 데 하고? 세종, 제주하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하되 향후에 유사성 기획위원회와 통합·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 내에서 정부 위원회 정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강욱 위원 아, 그러니까 광역 단체별로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통합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위원회가 작업이 진행되고, 이번에 통과되더라

도 저희들은 세종하고 제주, 강원도가 통합위원회, 하나의 위원회 밑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련이 됩니다.

○최강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강원특별자치도법 처음에 제정될 때 사실 법의 시급성은 누구나 공감을 하였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것인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닥이 안 잡혔지요, 지난 정부 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그게 가닥이 안 잡혀 가지고 아마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닥이 잡혀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잘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섭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탄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탄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관증인 채택 의결을 했는데요. 기관증인 외에 나머지 증인들과 참고인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관장하시고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시는 문제인데 제가 좀 요청사항 간단하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증인·참고인 중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당파적인 공방이 돼서 이렇게 정쟁화가 되지 않은 정말 순수하게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최소한의 본분과 관련된 일이고요. 이 사안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대통령선거 전후 이런 시기와 사실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의 기본적인 본분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오늘 간사님들이 마침 또 일하는 국회를 일치해서 강조해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해 주신 이 성실한 법사위하고도 또 관계된 문제이니까 좀 조속하게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사실은 지켜보고 계셨던 국민들 중에서 그 부분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도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또 아까 조정훈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저도 좀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조속히 좀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 하기 전에도 양당 간사님께서 일반증인, 참고인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목도를 하였습니다. 간사님들께서 잘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지요.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남 국
김 도 읍	김 승 원	김 의 겸	박 범 계
박 주 민	박 형 수	유 상 범	이 탄 희
장 동 혁	전 주 혜	정 점 식	조 수 진
조 정 훈	최 강 욱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성 희
전 문 위 원	심 정 희
전 문 위 원	한 석 현
전 문 위 원	유 인 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 육 부 차 관	장 상 윤
행 정 안 전 부 차 관	한 창 섭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 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 일 준
해 양 수 산 부 차 관	송 상 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특 허 청 장

조 주 현
이 인 실